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6228호, 2001. 1. 28. 공포, 2000.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석유판매업 관련 수수료의 징수금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함
(안 별표 1)
 - 주유소 등록신청시 : 20,000원
 - 용제 판매소 등록신청시 : 20,000원

□ 검토내용

- 석유사업법 제31조에서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바에 따라 주유소 등록시와 용제 판매소 등록시 각각 20,000원의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며 여타 업종의 등록 신고시 요율과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